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호 2000. 2. 2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성호영

1. 검토경과

- 가. 2000. 2. 29 사천시장 제출
- 나. 2000. 2. 29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0. 3.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축소하며,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관련규정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안 제10조)
- 라.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함(안 제12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므로서 이들이 영예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축소, 임대주택

용 부동산의 감면기준의 완화 등 세제혜택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 지원과 주택건설을 촉진하도록 하였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